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서울 3031- 4F	(전화번호)	건결 규정 4 조 1 항 국 강 건결사항
처리기간	85. 1	시 장	
시행일자	85. 1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1985. 1. 29</div>	
보존연한	영구		
보조 기관	도시계획국장	전결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1985. 1. 29</div>
	시설계획과장	결	
	시설계획계장	결	
기안책임자	조근호	85. 1.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1985. 1. 29</div>
경유 수신 참조	간인참조	발신	시강 봉 계
제 목	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 85. 1. 29 고시제 11호		
제 1 안 내부결재			
<p>1.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 고시 제 109 호 (84. 11. 30)로 결정코시된 성북구 길음동 25-2 일대 시장용지에 대한 변경결정 요청이 있어 검토한 바, 기결정코시된 변경 중 일부가 공유저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소유권 분쟁이 있어 지면 분할이 불가하여 시장개설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변경인부를 변경결정 인지 하는 내용으로</p> <p>2.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같은바 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의 2 규정에 따라 고시안과 같이 변경결정 인지 합니다.</p>			
첨부 관제서류 1건			정서
2안 고시안		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1985. 1. 29</div>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	
도시계획시설(시장)변경결정			판인
<p>1. 을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도록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같은바 시행령 제 6 조 및 제 7 조의 2</p>			발송

구절에 띄기 이를 고시한다

2. 관제도는 시운록변사,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의
방향구획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단지신유지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1

시 운 록 변 사 장

· 시설 변경 결정 문서

구분	시설명	의치	면적(㎡)	비고
기정	시장	성북구 길음동 25-2 일대	5.106	
변경	"	"	4.916	감 190㎡

· 도면 : 별첨 도면 표시의 같음 (도면생략)

제 3 안

수신 건설부장관

참조 도시시설계획과장

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
변경 결정 하오니 보고 합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.

2. 사유서 1부.

제 4 안

수신 총무처장관 (시:공보관)

제목 관(시)보 게재 의뢰



발신 시(국)장

1. 우리시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에 따른 게재를
이래와 같이 의뢰 합니다.

가. 게재 구분 : 고 시

나. 게재 기명 : 도시계획시설(시장) 변경 결정

다. 행정근거 :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

제 6권 및 제 7권의 2.

다. 기재내용 :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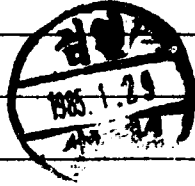
첨부 1. 고시문 사본 2(1)부

제 5 인

수신 성북구청장

참조 도시정비과장

제목 같 음



1. 도정 445-2031 (85.1.24) 와 관련하여

2. 위 호로 변경 결정 요청한 도시계획시설(시장)에 대하여 변경과 같이 변경결정 되었기 통보하든 관계부서의 통보 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

3. 도시계획법 제 13조의 의한 지적승인을 이행 하고 타행에 관련 되는 사항이 대하여는 시공시행 인가전에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토록 하기 바람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및 단면각 1부

제 6 인

수신 도시계획과장, 상공과장

제목 같 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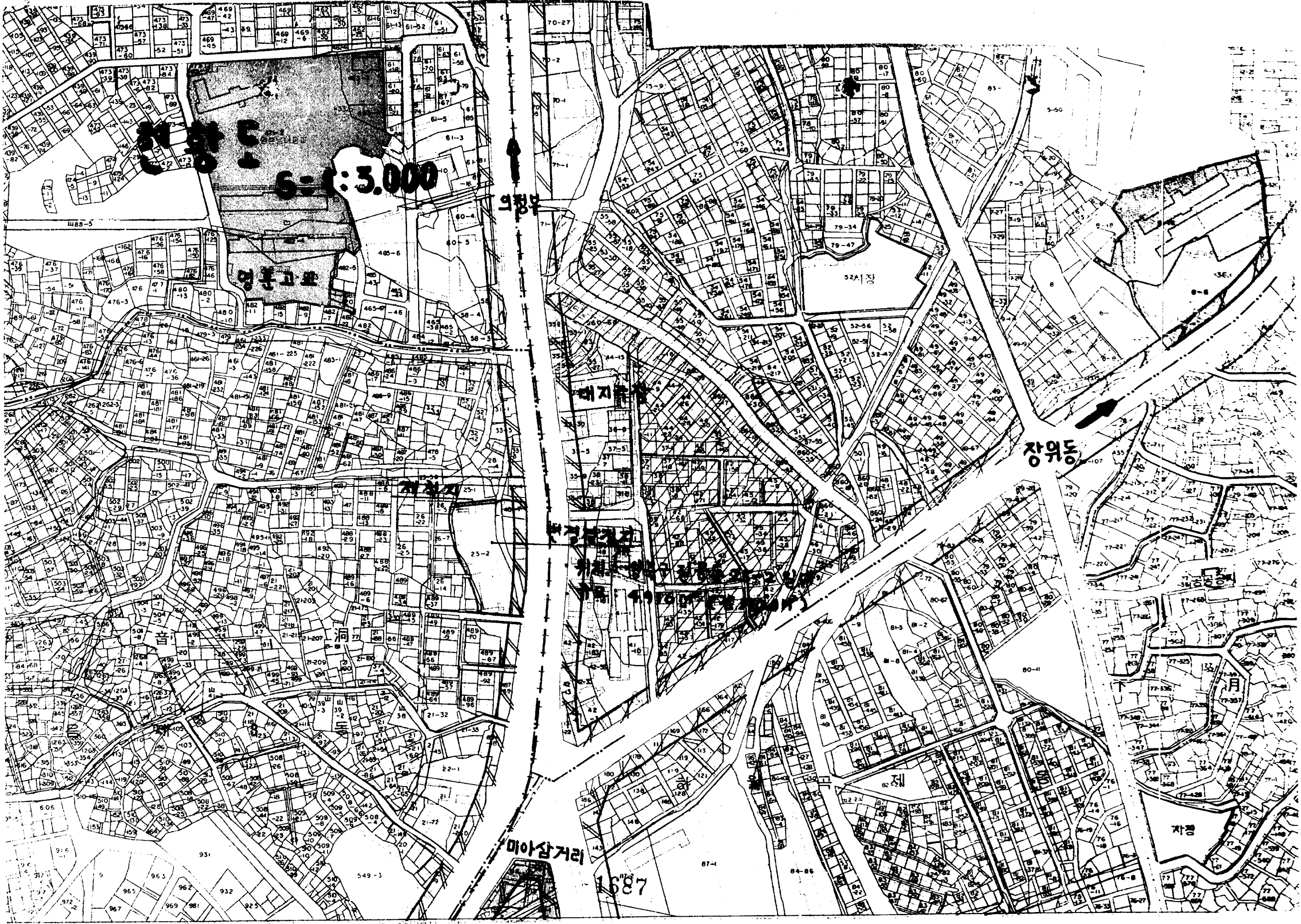


반신 과장

1. 우측 도시계획시설(시장)은 변경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든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및 단면 각 1부

1686



6-1:3.00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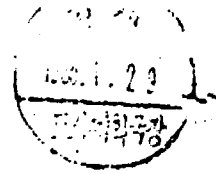
영풍고교

동양

미아삼거리

1687

자경



사 유 서

◦ 도시계획 결정경위

84.11.30 : 도시계획시설(시장) 결정

◦ 변경 사유

- 성북구: 길음동 25-1번지(면적 512㎡)는 2인 명의의 공유지로 되어있으며 그중 190㎡에 대하여는 시장용 지소유자 지번 소유로 되어있어 공유지를 포함 도시계획 결정하였으나,
- 본 공유지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있어 지번 분할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시장개설이 불가능 하며,
- 기 결정된 면적중 공유지(190㎡)를 제외하고 시장용 지로 변경결정.